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8. 11 선고 2020가단634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구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

담당변호사 박한결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8,650,019원 및 그 중 18,649,930원에 대하여 2020. 8. 10.부터 2020. 12. 25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0. 4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. 4. 9. 접수 제13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2 기재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과 같다.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별지2, 3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,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.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은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차윤제

별지